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4

발의연월일: 2021. 12. 3.

발 의 자 : 홍정민 · 조승래 · 신정훈

강선우 • 변재일 • 이용빈

황운하 · 김병욱 · 민형배

유정주・김수흥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 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의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의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 는데 이와 함께 현행법상 2021년 말로 종료하는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

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8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8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8
<u>2024년 12월 31일</u>
⑨·⑩ (현행과 같음)